

문서번호	문화체육과-10201
결재일자	2015.4.2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문화관광담당	문화체육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부구청장	
문종수	이명근	장순봉	도일환	04/20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담당 주무관		이용식 김용환 김하연		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일부 개정 계획



교육문화복지국
문화체육과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계획

우리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 하고,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

개정 배경

■ 문화예술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현행화, 신규 문화시설의 추가

-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 추가 및 시설의 도로명 주소 현행화

■ 시설 위탁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

- 시설의 위탁운영 위한 절차(수탁자 자격기준, 선정기준 등) 등 관련 규정 미비
- 불투명한 위탁운영 절차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“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(공정거래위원회, 2011년)” [기획예산과-7145(2014.06.16)]

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규정 신설

II

주요 개정 내용

■ 시설 목록 추가 및 명칭·도로명 주소 현행화를 위한 별표 1·2 개정

- 성북전시관 → 성북예술창작센터, 아리랑아트홀 → 미아리예술극장
- 시설목록 추가 :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
- 시설주소를 개정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

■ 시설의 위탁운영 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 준용 규정 신설(안 제6조제3항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

III **향후 추진 일정**

- 입법 예고 : 2015. 4. 23~ 5. 13 (20일간)
- 부패·인권·성별·아동영향평가 : 2015. 4. ~ 5.
- 법제 심사 : 2015. 5.
- 조례 일부개정계획 확정계획 수립 : 2015. 5.
-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안) : 2015. 5. 27
- 구의회 안건 상정 : 제235회 제1차 정례회
- 조례 공포(안) : 2015. 7. 16

붙 임 :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